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
2	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3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4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3
5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6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7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8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9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34
10	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7
11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5
12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1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1
14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 지원계획 동의안	58
15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61
16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64
17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8
18	장애인일자리사업(도자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3
19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77
20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1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6.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6. 2.

나. 발 의 자 : 이흥희 의원 대표발의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의원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6. 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6.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흥희 군의회 의장]

가. 제안이유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021.7.)에 따라 거창군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조례는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거창군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부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특성과 거창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자치경찰 및 자율방범대 등 범죄예방 활동 사항
6.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요 군정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창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치안관련 안전 시설 운영, 자율방범대 등 치안 협력 단체 및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분야 사업
2.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3.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4.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5.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6. 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 지원 및 외국인 범죄 예방 활동 등 분야 사업
7. 지역치안 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행사, 홍보, 회의 등 분야 사업
8.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거창군의회, 거창경찰서, 거창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 ② 협의회장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거창군 및 거창경찰서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 ③ 협의회 간사는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거창군과 거창경찰서 소속 자치경찰사무 주무팀(계)장 각 1명씩으로 한다.
- ④ 실무협의회는 연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6.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6. 2.

나. 발 의 자 :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표주숙,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의원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6. 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6.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표주숙 의원]

가. 제안이유

- 행정기관 민원실의 설치·운영,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시간의 연장,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6.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6. 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6.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권해도]

가. 제안이유

-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거주시설 운영,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 정비함(안 제2조)
- 후생복지시설 운영 대상 확대함(안 제6조)
 - 1) 무주택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거주시설
 - 2)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후생복지 사업의 현행화 및 확대함(안 제7조)

- 1) 장제용품 등 장제비 지원 ⇒ 장제비 지원
- 2)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신설
- 3) 출산축하 기념품 지원 ⇒ 출산·생일 격려품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조례는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거주시설 운영, 휴양 시설 이용료 지원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확대 시행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사용하는”을 “사용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무주택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거주시설
4.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제2호·제5호·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제비 지원
5.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7. 출산·생일 격려품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양소 등 이용료 및 생일 격려품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5호의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과 같은 조 제7호의 생일 격려품 지원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6.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6. 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6.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가. 제안이유

-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3조·제4조)
-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 지원 신청 및 결정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안전한 근무환경을 정함(안 제7조)
- 사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부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거창군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해야 한다.

1. 치료 및 상담
2.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3. 법률상담 및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4. 교육 및 연수
5. 업무조정, 전보 등의 인사 조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6.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6. 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6.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윤광식]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생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용 법령 등 정비함(안 제명·제1조·제5조·제9조의3)
 - 1) 인용 법령 변경 : 「식품산업진흥법」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 띄어쓰기 및 약칭, 실효된 조문 삭제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함(안 제9조의2)
(현행) 2022. 12. 31. ⇒ (변경) 2023. 12. 3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조례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생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해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를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1조 “군세”를 “거창군 군세”로 한다.

제5조 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의2 중 “2022년”을 “2023년”으로 한다.

제9조의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를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로 한다.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6.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6. 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6.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윤광식]

가. 제안이유

-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압류하여 매각할 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15조)
 - 1) 조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 ⇒ 제30조
 - 2) 용어: 주민세 재산분 → 주민세 사업소분
-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정함(안 제3조~제6조)
 - 1) 전문매각기관의 요건, 신청, 선정, 선정 취소

○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를 정함(안 제7조~제13조)

- 1) 매각대행 의뢰와 압류재산의 인도
- 2)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의뢰, 협의사항, 매각대행 해제요청
- 3) 매각재산 인도, 매각대금 수령, 매각대금 등의 배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조례는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압류하여 매각할 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세”를 “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5조(종전 제3조) 중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전문매각기관의 요건)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의 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제4조(전문매각기관 신청) ① 전문매각기관 신청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3조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의 기한

을 정하여 보완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③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을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 후 선정한다.

② 1차 심사는 군세징수 소관 부서의 장이 제3조의 요건을 검증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거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매각의 전문성·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은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복수의 기관을 선정한다. 이 경우 선정 사업자의 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 경우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은 선정 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업·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벌을 받거나 「지방세기본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매각대행의 의뢰와 압류재산의 인도) ① 군수는 법 제103조의3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을 전문매각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의뢰 물품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91조의11제5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때에는 압류조서와 실물상태를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의뢰)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9조(전문매각기관의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채납처분비의 과도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 20일 이내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군수는 협의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군수에게 매각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매각을 의뢰받은 예술품등에 대하여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2. 매각절차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제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예술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군수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고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군수는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 수수료 등의 명세서와 증명서류를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해야 한다.

제13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해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전문매각기관에서 매각대행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6.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6. 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6.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가. 제안이유

- 신입생 유치를 위한 인구증가와 승강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대학교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 추가에 따른 제명 및 목적 정비(안 제명·제1조)
- 호 삭제 등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3조)
- 등록금 지원을 정함(안 제4조)
 - 1) 목적 :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함
 - 2) 범위 : 수업료 및 입학금

- 3) 대상 : 군에 주소를 둔 대학 입학생 및 재학생이고 성적 등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등록금의 지원신청, 중복지원 제한을 정함(안 제5조·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조례는 한국승강기대학교 신입생 유치와 승강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 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를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한국승강기대학을 지원·육성”을 “한국승강기대학과 재학생을 지원”으로 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용”을 “교육용”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등록금 지원) ① 군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학 등록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등록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일 것
2. 성적 등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

제5조(등록금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등록금의 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등록금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액만큼 빼고 지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3학년도 등록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6.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6. 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6.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가. 제안이유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범위 확대함(안 제15조)
 - 1) (현행) 최대 100억원까지 ⇒ (변경) 최대 200억원까지
-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신설함(안 제19조)
 - 1) 현행 :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규정은 기반시설사업지원과 중복 규정으로 삭제하고 규칙으로 구체화함

2) 신설: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임차료 지원, 대규모 투자지원에 대한 특별규정

○ 이중지원 금지사유 구체화함(안 제38조)

1) 예외규정 신설: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받는 경우, 사업장 매입비 용자 지원받는 경우

2) 이중지원 금지사유 추가: 국가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조례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 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제6조제1항 중 “제척”을 “제척(除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피”를 “기피(忌避)”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피”를 “회피(回避)”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기업지원 또는 투자유치 담당주사”를 “기업 또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100억원까지”를 “200억원까지”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일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중 “군 의회”를 “군의회”로 한다.

제28조 중 “「거창군세 감면 조례」”를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의 신설·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1조제2항제3호의 사업장 매입비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당시의 조례에 따른다.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6.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6. 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6.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가. 제안이유

- 거창군 문화시설 등과 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또는 행사의 장소에 방문하는 군민과 방문객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할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문화체육활동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순환버스 운영, 노선 및 운행범위, 이용대상자, 목적 외 운행 금지를 정함(안 제3조~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조례는 거창군 문화시설 등과 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또는 행사의 장소에 방문하는 군민과 방문객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할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 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1부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군민과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등”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문화·체육·문화재·기념 시설 등 또는 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행사 장소를 말한다.
2. “순환버스”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문화시설등에 대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순환버스 운영) ① 군수는 문화시설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군수는 문화시설등의 위치·성격,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노선 및 운행범위를 정해야 한다.

제5조(이용대상자) 군수는 이용자만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목적 외 운행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순환버스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6.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6. 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6.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가. 제안이유

- 초고령 사회 속에서 기존의 노인복지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가. 목적, 기본이념,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
(안 제1조~제5조)
-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6조·제7조)
- 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정함(안 제8조~제16조)
- 라. 위원회를 정함(안 제17조~제25조)
- 마. 모니터단을 정함(안 제26조~제2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조례는 거창군을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 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을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②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군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고령친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방법
3. 연도별 추진계획 및 세부 추진사업
4.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해야 한다. 다만, 조사 및 연구 시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 등을 확충하고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일자리지원기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사회·문화 활동 참여의 장려) 군수는 노인이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업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군수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2. 노인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3.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4.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5.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13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2.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업

제14조(건강증진) 군수는 노인의 건강한 심신과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2.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3.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업

제15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군수는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 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고령친화도시조성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심의 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고령친화도시조성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고령친화도시 업무 소관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노인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령친화도시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워야 한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고령친화도시조성 모니터단)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창군 고령친화도시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점검
2. 일상생활에서 노인의 불편사항 발굴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건의
4.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모니터단 구성) ① 모니터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한다.

1.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2.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28조(실비보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모니터단 활동에 실제로 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6. 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6. 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6.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가. 제안이유

- 치매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거창군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신축(2023. 12 준공 예정)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위치를 정함(안 제2조)
- 위탁 운영을 정함(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조례는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인 ‘공립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노인요양시설은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2997에 둔다.

제3조(위탁 운영) 군수는 노인요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6.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6. 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6.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가.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개정(2023. 3. 28. 시행)으로 정보 파기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령 개정사항, 재기재 등 정비함(안 제1조·제2조·제4조·별표)
- 정보 파기 위반 과태료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 1) 대상 :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은 자
 - 2)금액 : 1차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3천만원
 - 3) 근거 : 「지역보건법」 제3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조례는 2023년 3월 28일 시행된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정보 파기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정보 파기 위반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을 “「지역보건법」 제34조 제3항에서 위임된”으로 “필요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과태료”를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6.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6. 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6. 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6. 13. 상정·의결)

2.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윤광식]

① 2023년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 제안이유

- 주차난이 열악한 주택가 지역에 자투리땅과 단독주택, 나대지 등을 활용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위 치 : 거창읍 상림리 31-46번지 등 6필지
- 취득면적 : 토지 1,463㎡ / 주택 117㎡
- 소요예산 : 1,800백만원 정도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예상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적				
계				1,463	1,537,739			
취득	주택	상림리 31-46	대	274	379,983	2023.7.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취득	토지	상림리 31-47	대	148	189,431			
취득	주택	중앙리327-9,329-1,329-11	대	392	326,230			
취득	토지	중앙리 328-10	대	139	198,395			
취득	토지	중앙리 324-14	답	275	239,250	미정		
취득	토지	중앙리 324-8	답	235	204,450			

※ 예상가격 : 가감정평가 / 토지(공시지가×면적×2), 건물(개별주택가격)

다. 추진경과

- 2023. 1. ~ 2. : 2023년 1차 단독주택(나대지) 매입 공고·접수
- 신청현황 : 24개소 38필지
- 2023. 4. : 매입부지 선정 심의

라. 향후계획

- 2023. 5. ~ 6. :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감정평가
- 2023. 6. ~ 7. : 보상협의
- 2023. 8. : 대상지 실시설계 용역
- 2023. 9. ~ 10. : 착공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주택가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흡수로 주차난 해소 및 양방향 불법 주차 감소로 차량 교행 원활
-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대비 조성 기간 단축 및 예산 절감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② 대동리 회전교차로 주변 건축물(화장실) 설치사업

1. 제안이유

- 대동리 회전교차로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건축물(화장실 설치, 지중화 변압기 이설) 및 주민 쉼터 공간을 설치하여 회전교차로 주변 경관개선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 업 명 : 대동리 회전교차로 주변 건축물 설치사업
- 위 치 : 거창읍 대동리 837-1번지
- 사 업 비 : 1,000,000천원
 - 토지매입 708,000천원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지 번	지목	면 적		공시지가	예상가격	비 고
		공부상	매입			
거창읍 대동리 837-1번지	대	118	118	1.960	708,000	

※ 예상가격 : 가감정평가액 708,000원

다. 향후계획

- 2023. 5. :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
- 2023. 6. : 부지 매입
- 2023. 9. ~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라. 기대효과

- 대동리 회전교차로 주변 화장실 및 주민쉼터 설치로 경관개선 및 주민 편의 제공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③ 신원면 농산물직판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1. 제안이유

- 감악산 별바람언덕 방문객 및 클럽D 골프장 방문객 대상으로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하고,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산물직판장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위 치 : 신원면 덕산리 237번지 외 1필지
- 면 적 : 1,824㎡
- 사업기간 : 2023. 5. ~ 12.
- 사 업 비 : 576,331천원
 - 부지취득 : 126,331천원(토지 가감정 평가액 기준)
- 내 용 : 농산물직판장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 및 시설물 신축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공시지가)	취득사유	비고
계	2필지		1,824			
취득	신원면 덕산리 237	답	489	8,740	농산물 직판장 조성	
취득	신원면 덕산리 248	답	1,335	8,740		

다. 추진경과

- 토지소유자 사전 협의 : 2022. 6.
- 농산물직판장 조성 관련 사전검토 : 2022. 12.
- 취득재산 감정평가 : 2023. 1.

라. 향후계획

- 토지보상협의 : 2023. 5.
- 추경예산 편성(토지매입, 건축) 및 행정절차 이행 : 2023. 9.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3. 11.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4. 2. ~ 6.

마. 기대효과

- 감악산 및 클럽D 골프장 탐방객의 만족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우수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신규 판로 개척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에 의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① 2023년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은

-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계획으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주택 밀집 지역 구도심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② 대동리 회전교차로 주변 건축물(화장실) 설치사업 건은

- 대동리 회전교차로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고, 지중화 변압기를 이설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해당 지역은 병의원과 약국이 밀집해 있고, 장날에는 상권이 형성되는 곳으로 유동인구가 많으며, 상인과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화장실이 필요하기는 하나 인근에 개방형 화장실이 있고, 변압기는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여 경관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③ 신원면 농산물직판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은

- 감악산 별바람언덕 방문객과 클럽D 골프장 고객을 대상으로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최근 늘어나는 관광객과 신원 IC 개설 예정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농산물직판장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대동리 회전교차로 주변 건축물(화장실) 설치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함.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

- 화장실 신축과 변압기 이설을 목적으로 평당 2천만 원이 넘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그 토지의 형상으로 보아 활용도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우려가 있으며,
- 화장실 문제는 인근 개방형 화장실을 적극 홍보하여 이용케 하고, 변압기는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래핑 등으로 경관을

개선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 판단하여

- 대동리 회전교차로 주변 건축물(화장실) 설치사업 건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 자원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6.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6. 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6. 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6.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가. 제안이유

-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내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을 조속히 완료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방안 필요
- 승강기기업체 유치를 통한 승강기산업 집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기업에 특별지원 필요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의 미분양 된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 하는 경우(단, 기존 분양 필지 및 공장 매입하는 경우 특별지원 제외)

* 산업시설용지 33필지(192,549.5㎡) 중 미분양 9필지(39,609.2㎡)

- 2023년 4월 이후 거창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거창승강기 베스트밸리에 투자하는 거창군 외 소재하는 승강기기업체

○ 지원계획

- 지원조건 : 총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상시고용 10명 이상
-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방안	비 고
시설보조금	시설투자금액의 10% 지원	지원한도 10억 원
이전보조금	이전시설가액의 10% 지원	〃

※ 기타보조금 :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적용

- 지원예정시기 : 투자완료 후 지원

다. 관련법규

-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7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동의안은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의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 (9필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 2023년 4월 이후 거창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거창승강기 베스트밸리에 투자하는 거창군 외 소재하는 승강기 기업체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승강기베스트밸리 내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을 조속히 완료하고 승강기산업 집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6.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6. 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6. 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6.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가. 제안이유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
-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 설 명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 위 치 : 거창읍 수남로 2193-40(장팔리 7)
- 주요시설

구 분	전수회관		체험관1	체험관2	체험관3
	지하 1	지상 1			
951.6㎡	141.6㎡	679.5㎡	57.6㎡	40.5㎡	32.4㎡

○ 위탁대상 사무

-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무형문화재 교육 회원 관리 및 체험활동 보조
- 전수관 시설물 관리 위탁 및 사용료 관리

○ 위탁기간 : 3년 이내(2023.12.19. ~ 2026.12.18.)

○ 수탁자(단체)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현재 민간위탁운영현황

- (사)향토민속보존협의회 수탁 / 2020.12.19. ~ 2023.12.18.(3년)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8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2) 그간 추진현황

-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 2023. 5월

3) 향후계획

- 수탁자(단체) 모집공고 : 2023. 8월 중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단체 결정 : 2023. 9~10월 중
- 위·수탁계약 체결 : 2023. 11월 중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동의안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의 민간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문화재보호법」 제8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6. 26.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6. 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6. 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6.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가. 제안이유

- 노인·여성·장애인 통합복지시설인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기간 (2019. 1. 1. ~ 2023. 12. 31.)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 통합복지시설인 거창군 삶의 쉼터의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갖춘 법인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시설구성(㎡)	
		대지	연면적	노인·여성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거창군 삶의 쉼터	거창읍 거안로 126-41	15,057㎡	5,508.99㎡	3,009.31㎡	2,499.68㎡

- 사업내용 : 거창군 삶의 쉼터 운영
- 위탁대상 사무
 - 시설 : 거창군 삶의 쉼터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 운영 : 노인과 여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소요예산
 - 시설운영비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인건비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운영비 : 전년도 운영비 계상분 적용

다. 참고사항

1)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거창군 삶의 쉼터는 노인·여성·장애인을 위한 통합복지시설로 전문적 사업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을 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및 지역의 노인·여성·장애인 복지증진에 기하고자 함
- 지난 2008년 개관이후 10년 이상 위탁 운영한 결과 시설평가에서 최우수 복지관으로 선정되는 등 전문성 있는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였기에 통합복지시설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위탁운영 하고자 함

2)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조례」 제6조

3) 향후계획

- 2023. 8. 11. ~ 9. 1. : 운영 수탁법인 모집공고 및 접수
- 2023. 9월초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3. 9월중 : 수탁자 심사결정 및 통지(고득점자 선정)
- 2023. 9월말 : 위·수탁 운영관리 협약 체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동의안은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제2항에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하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6.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6. 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6. 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6.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가. 제안이유

- 우리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2023년 12월 준공 예정되어 있음
- 치매노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갖춘 법인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 이에 대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동의(승인)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시설의 운영을 민간 위탁함을 동의(승인) 받고자 함

2)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사업개요

- 위탁시설 :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 위 치 :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2997
- 시설규모 : 연면적 2,930㎡(지하1층, 지상2층)
 - 입소정원 100명 / 치매전담실 2실
- 필요인력 : 61명(요양보호사 45, 기타 운영인력 16명)
- 운영방식 : 민간위탁 운영
- 시설현황

구분	시설구분	면적(㎡)	주요시설
계		2,930.47	
지하층	설비시설	359.44	발전기실, 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지상1층	소계	1,797.58	
	관리시설	340.45	사무실, 원장실, 자원봉사실, 면회실, 시설관리실
	치매전담실	416.72	2실(12인x2실-24인)
	요양시설	1,040.41	10실(4인x9실, 특실x1실-37인), 공동거실, 프로그램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식당, 요양보호사실
지상2층	요양시설	773.45	10실(4인x10실-40인), 공동거실, 목욕실, 식당

4)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있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인력에 의한 고품질의 공공노인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법인 위탁 시 탄력적, 효율적 시설운영으로 군 재정부담경감이 가능하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 및 가족부담 경감에 기여

5) 시설운영(안)

○ 운영예산 : 연2,649,900천원 *독립채산제로 운영(100인 입소 시 예산)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군 재정지원 불필요)

단, 개원이후 운영 정상화 이전(정원 충족) 운영비 지원 필요

○ 연간 예상 수입 ·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합계	2,649,900	합계	2,649,900
입소자부담(20%)	529,980	인 건 비(80%)	2,119,920
요양급여(80%)	2,119,920	운 영 비(20%)	529,980
☞ 산출근거 : 100명 × 72,600원 × 365일 = 2,649,900천원			

※ 산출근거 : 건강보험공단 자료<장기요양 2등급 기준>

※ 운영 수익금 중 일부를 시설노후 대비 개보수 비용으로 매월 적립

○ 입소정원 : 100명(일반 76명, 치매전담 24명)

○ 배치인력 : 61명

계	시설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조무사)	물리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61명	1명	1명	1명	4명	1명	45명	1명	1명	4명	1명	1명

6)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무 :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 요양시설 보호대상 노인성질환, 중증 치매 노인 등 입소보호

- 노인성질환, 치매노인에 대한 상담, 가족지원, 의료·사회재활 등 프로그램 운용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위·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수탁자격 :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이 주 목적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 향후 추진일정

- 2023. 7월 ~ 8월 : 운영 수탁법인 모집공고 및 접수
- 2023. 8월 ~ 9월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
- 2023. 9월 : 심사결정 및 통지(고득점자 선정)
- 2023. 9월 : 위·수탁 운영관리 협약 체결
- 2023. 12월 : 시설 준공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동의안은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 요양시설’을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법령위반이나 절차상 하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장애인일자리사업(도자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6.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6. 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6. 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6.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가. 제안이유

○ 기 위탁 추진 중인 장애인일자리(도자체사업) 위탁 기간 만료 예정

※ 위탁 추진 기간 : 2021. 1. 1. ~ 2023. 12. 31.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탁기관 시설·단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대상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도자체 사업 및 군비추가분)

- 도자체사업과 군비 추가부분에 한하여 위탁 운영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복지형) 사업내용 준용
- 2) 위탁 참여인원 : 12명(도 자체사업 계획에 따라 인원 변동 가능)
- 3) 위탁사무
- 장애인일자리(도자체) 사업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계도 업무 장애인일자리 업무 수행
 - 일자리 참여자 모집·선발·교육·훈련·사후 관리 등 업무 수행
 - 참여자 근태관리 및 인건비 지급
- 4)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5) 위탁방법 : 공개모집
- 6) 수탁자격 :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장애인일자리(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 민간단체(장애인 단체 등)
- 7)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다. 참고사항

- 1)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직접 운영 시 일자리 참여자 12명(예정)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의 효율적 추진
 - 민원 발생이 많은 사업의 특성상 위·수탁기관 역할 분담을 통한 전문적인 관리 필요

⇒ 위탁기관(거창군) : 사업총괄, 과태료 부과 상습불법주차구역 관리 등

○ 수탁기관 장애인시설 · 단체 운영 활성화 도모

2)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

○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p.71

- 복지일자리(참여형):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사업 수행가능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3) 향후계획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3. 6월 정례회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2023. 11월

○ 위·수탁 협약체결 : 2023. 12월 중

4) 소요예산(2023년 기준) : 82,478천원(도비 8,118, 군비 74,360)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경비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복지형)지침 준용에 따라 사업비
매년 변동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4호, 보건복지부 지침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서’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6. 26.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6. 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6. 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6.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가. 제안이유

1) 기 위탁 추진 중인 위탁 기간 만료 예정

※ 위탁 추진 기간 : 2022. 1. 1. ~ 2023. 12. 31.

2) 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개인위생 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장애인 이동 목욕
차량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 업 명 : 거창군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2) 사 업 량 : 목욕 차량 1대, 이용자와 차량 운행 관리

3) 위탁대상 사무

- 목욕차량 위탁운영(1대)
- 위탁차량 관리와 차량운행 업무 등 사무관리
- 목욕차량 이용자 선정 등 관리

4)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3년

5) 위탁방법 : 현 수탁기관 재위탁 / 거창군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
(관장 김경표)

6) 그간 운영상황

- 수탁기관 : 거창군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
- 위탁기간 : 2022. 1. 1. ~ 2023. 12. 31.
- 위탁차량

차 종	규 격	차량번호	연 식	비 고
이동목욕차	내장탑차	99부4930	2021	※ 2021. 7. 차량 교체

다. 참고사항

1) 재위탁 사유

- 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을 받지 못하는 불편 어르신들에게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위생관리와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목욕차량의 운영이 필요함
- 매년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응답이 98%이상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음
- 위탁금은 대부분이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현 수탁기관(거창군삶의쉼터)의 후원금으로 운영 재료비의 부족분을 충당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

력을 수탁기관의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무료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현 수탁기관처럼 기관의 자체 후원금과 인력을 충당하며 수행할 기관이 없는 실정으로, 재위탁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향후일정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3. 6월 정례회
- 재위탁 신청서 접수 : 2023. 9월 중
- 재위탁 적격여부 심의 : 2023. 10월 중
- 재협약 체결 : 2023. 12월 중

4) 소요예산

- 위탁운영비 : 연간 36,000천원 /2023년 기준
 - 최저인건비 상승 등 요인 발생시 위탁금 인상 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에 대해 향후 3년간 재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6.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6. 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6. 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6.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가. 제안이유

-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하여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사 업 명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 2) 위탁대상 사무 : 여성결혼이민자 채용 및 관리
 - 여성결혼이민자 상시고용 : 연간 5~ 10명
 - 근무조건 : 근로기준법 준수하여 근로계약 체결

- 근무내용: 결혼이주여성 능력에 따라 다양한 업무 수행
- 월 급여: 1인당 월 근로임금 50만원 이내 채용 장려금 지급 (위탁금), 그 외 임금은 수탁기관 부담
- 3) 수탁기관 가격기준 : 4대 보험 가입하는 기업체 또는 법인
 - 연중 5~10명 정도의 여성결혼이민자 상시채용과 관리가 가능한 기관
- 4) 위탁방법 : 공개모집
- 5)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다. 참고사항

1) 관련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2)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법인 선정 공고 및 접수 : 2023년 11월
- 민간위탁심의위원 구성 : 2023년 12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정 : 2023년 12월
- 위·수탁협약 체결 : 2023년 12월
- 위탁업무 개시 : 2024년 1월
- 소요예산 : 연간 30,000천원(위탁운영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위탁 만료되는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다문화가족법」 제16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